

대전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가단10128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606,224원 및 그 중 179,605,834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2.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1. 8. 17. 접수 제83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판사 김영호

목 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의 2필지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위 지상

철골조 철판지붕 단층 참고

1층 198㎡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체결에 따른 주채무자이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상 연대보증인입니다.

다. 피고 C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청구권 발생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 발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2019. 9. 23.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9. 23.부터 2020. 9.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9. 9. 23. 소외 D 은행 천안여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20. 9. 22.(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에 의하여 보증기한이 2022. 9. 16.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 갑 제3호증의 1, 2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각 참조).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 할 경우, 위 신

용보증약정서 제10조 “상환범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1.보증채무이행금액, 2.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대위변제수수료, ②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1.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나. 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피고 주식회사 A 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기업일반자금대출로 대출 받았으나 이후 2021. 9. 30. 사업장 폐업에 따라 신용보증 부실처리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전리기업종합정보표, 갑 제5호증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각 참조).

다. 구상금 청구채권 발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의 위 신용보증 부실처리로 인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21. 12. 30. 소외 은행에 181,386,398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 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라. 지연손해금 및 확정손해금 발생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1. 12. 30.부터 현재까지 연 8%이며,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 후 원금 1,780,564원 회수로 인하여 확정손해금 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기간별 손해금률 변동표, 갑 제8호증 확정손해금 계산근거 각 참조).

마. 소결

그렇다면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606,224원(대위변제금 잔액 179,605,834원+확정손해금 390원) 및 그 중 179,605,834원(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법률행위

나. 사해의사

채무자 피고 B 이 자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친동생인 피고 C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써 이에 피고 B 의 손해의사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 C 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사해행위 이후인 2021. 12. 30. 대위변제가 되어 원고 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지만, 2021. 8. 10. 사해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 9. 23.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2021. 9. 30. 사업장 폐업에 따른 신용보증 부실처리되어 결국 채권발생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이에 피보전채권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라.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으로 피고 C 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물, 피고 C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위소 청구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